

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서

- *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(<http://www.foodsafetykorea.go.kr>)에서도 회원가입 후 온라인 보고가 가능합니다.
- *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주십시오.
- *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고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.

관리번호		
보고자(영업자)	업소명	대표자 성명
	소재지	전화번호
	영업 구분	[]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[]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[]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
		[]약국개설자 []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자
	허가(등록·신고)번호	
건강기능식품 내용	제품명	
	품목(제조·신고) 번호	
	제조업체(수입업체)명	
	소비기한(제조번호)	
이상사례 내용	1. 대상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:	
	2. 징후, 증상 또는 질병의 내용:	
	3.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기간 및 섭취량:	
	4. 그 밖의 사항:	

유의사항

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서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
1. 사망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: 7일
2. 제1호 외의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: 15일

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자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식품안전정보원 귀하